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상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386
----------	-------

발의연월일 : 2026. 6. 19.

발 의 자 : 곽상언 · 권향엽 · 김남근
진성준 · 김 윤 · 허성무
박용갑 · 황정아 · 오세희
송재봉 · 이광희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은 2025년 3월 18일 신설됨. 그 내용은 행정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임. 또한, 같은 날 신설된 제36조제6항은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3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한편, 「의료급여법」 제30조제1항은 수급권자의 자격, 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에 관한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2항은 급여비용의 심사·조정에 관한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각각 규정하며 이의신청의 방법·결정 및 그 결정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음. 또한 같은 법 제30조의2는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89조에 따른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행정기본법」 제36조제6항에 의해 「의료급여법」상 이의신청 절차에도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이 적용되는 결과, 행정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담하게 됨.

그러나 「의료급여법」 제30조는 이의신청의 결정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을 뿐, 결정 통지 의무 자체와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제기기간에 관한 안내 의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음. 또한 같은 법 제30조의2의 심판청구 절차 역시 결정 통지 의무와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 및 제기기간에 관한 안내 의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음.

즉, 「의료급여법」 제30조 및 제30조의2의 규정만으로는 결정 통지 의무 및 쟁송수단 안내 의무가 없기 때문에, 「행정기본법」과 법률 규정체계를 동일하게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의신청인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받고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그 제기기간을 충실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심판청구인이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받고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그 제기기간을 충실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의료급여법」 제30조 및 제30조의2를

개정하고자 함(안 제30조제5항·제6항 신설 및 제30조의2제3항·제4항
신설).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급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중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급여비용심사기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⑥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급여비용심사기관은 제5항에 따라 결정을 통지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 재송수단과 그 제기기간을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결정을 통지하기 전에 이미 신청인이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안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0조의2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서”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로 한다.

③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대하여 결

정한 때에는 그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④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결정을 통지하는 경우 청구인에게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그 제기기간을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결정을 통지하기 전에 이미 청구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안내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의2(심판청구) ①·② (생략)

<신 설>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판청구의 절차·방법·결정 및 그 결정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0조의2(심판청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대하여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④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결정을 통지하는 경우 청구인에게 행정소송 등 재송수단과 그 제기기간을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결정을 통지하기 전에 이미 청구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안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

-----.